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부당한 자체조달에 대한 조달청의 시정요청 근거 마련〉

■ 진성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493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부당한 자체조달에 대한 조달청의 시정요청 근거 마련 (안 제16조제4항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진성준의원 등 15인

나. 발 의 일 : 2025. 1. 14.

다. 회 부 일 : 2025. 1.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달청장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정보, 계약 관련 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나라장터 등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 수요기관의 잘못된 관계 법령 해석으로 인한 부당한 계약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체적으로 계약을 발주·체결하는 ‘자체조달’의 경우에는 조달청이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조달청이 잘못된 정보의 수정 및 변경을 요구하거나, 유사한 사례의 방지를 위하여 부당한 계약의 사례를 공지하는 등의 적극적인 관리·운영을 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조달청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공고 및 계약에 대한 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해당 수요기관에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시정토록하여 조달업무의 안정성·신뢰성 및 공정성을 더욱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부당한 자체조달에 대한 조달청의 시정요청 근거 마련

(안 제16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 부당한 자체조달에 대한 조달청의 시정요청 근거 마련 -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의 발주·계약에 잘못이 있음을 인지한 경우 해당 수요기관에 수정요청 가능 - 유사한 사례 방지를 위해 전자조달시스템에 관련 사항 공지 가능

개정안은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의 발주 또는 계약 사항에 관계 법령 등의 잘못된 해석 등으로 잘못이 있음을 인지한 경우, 해당 수요기관에 이에 대한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조달시스템에 관련 사항을 공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¹⁾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 수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국가기관과 그 소속 기관이 수요물자를 구매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1억원(외국산 물품의 경우에는 미합중국화폐 20만달러) 이상인 것
2. 국가기관과 그 소속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이 구매하려는 수요물자로서 조달청장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
 - 가. 법 제12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 나. 법 제13조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방식으로 수요기관을 위해 체결한 계약

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해야 함. 반면, 추정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경우 등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자체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발주(이하 “자체발주”라 함)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에 따르면 수요기관이 자체발주하는 경우 관계법령 해석의 오류 등으로 인해 잘못된 계약이 체결될 우려가 있더라도 조달청이 수요기관으로 하여금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조달청이 잘못된 계약이 체결될 우려가 있는 자체조달을 발견해도 해당 수요기관에게 계약공고를 시정하도록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일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이 면세로 해석해 자체발주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2024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

3. 국가기관과 그 소속 기관이 체결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것으로 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4. 수요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조달청장이 체결한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장기계속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을 말한다)으로서 제2차 이후 계약인 것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 구매 또는 공사의 계약체결을 위탁하고 있는 것

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음²⁾.

개정안은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의 자체조달 관련 입찰공고 및 계약 사항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한 경우 그 문제점에 대한 수정을 요청할 수 있고, 잘못된 계약의 체결사례가 발생해도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사례를 공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자체조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조달업무의 안정성·신뢰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기획재정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공공조달의 안정성, 신뢰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요기관의 부당한 발주·계약사항에 대한 시정 및 공지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바이나, 조달청장에게 시정 권한이 부여될 경우 실제 운용과정에서 수요기관의 발주·계약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경우 각 수요기관이 자율적으로 자체사무를 집행·감독할 수 있는 권한 침해 및 그동안 추진된 지방자치단체 등의 발주 자율화와 부합되지 않는 측면에 대한 고려도 함께 필요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행정역량이 열악한 행정기관·공공기관 또는 조달 관련 실무

2) 2024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부대 폐기물 처리용역과 관련해 위법적 면세를 해온 사실이 드러남.

-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군부대들이 음식물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고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면세사업으로 계약해왔음. 부대들이 이와 같이 면세계약을 맺어온 이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를 잘못 해석하여 이를 적용해온 것으로 나타남.

경험이 부족한 조달 담당자의 경우 관련 법령 미숙지 등의 사유로 자체조달 관련 입찰공고 및 계약사항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이러한 경우 조달청이 문제를 인지하여 수요기관에 시정을 요청함으로써 조달 관련 오류 또는 문제점 등을 수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은 바람직한 입법방향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조달청장에게 강제적인 시정권한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의 우려와 같이 수요기관의 자율적인 권한을 침해할 소지는 제한적이며 수요기관의 자율적인 업무처리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위반 소지가 있는 문제사항만을 인지하여 통지만 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발주자율화와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계약 관련 정보 등의 관리 및 제공) ① ~ ③ (생략) <u><신설></u>	제16조(계약 관련 정보 등의 관리 및 제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전자조달 시스템(제14조에 따른 자체전자조달 시스템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입찰 공고 또는 계약 사항에 관계 법령 등의 잘못된 해석 등으로 잘못이 있음을 인지한 경우 해당 수요기관에 이에 대한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와 관련한 사항을 공지할 수 있다.</u>

문의처

02)6788-5160